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1(목) 09:30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93호

나. 제 출 자 : 고영찬의원, 정순기의원, 장규권의원, 정재동의원,
엄샛별의원, 고성미의원

다. 제출일자 : 2022. 7. 13.

라. 회부일자 : 2022. 7. 13.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
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소통담당관” 을 신설(안 제3조제2항제2호)

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기획재정국” 을 “기획경제국” 으로,
“행정문화국” 을 “행정안전국” 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도시안전국” 을 “푸른미래도시국”
으로, “경제환경국” 을 “문화환경국” 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3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생략)</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행정재경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신설></p> <p style="padding-left: 20px;">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라.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사. (생략)</p> <p>3. 복지건설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도시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라.·마. 삭제</p> <p style="padding-left: 20px;">바.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p> <p>③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style="padding-left: 20px;">-.</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 기획경제국 -----</p> <p style="padding-left: 20px;">라. 행정안전국 -----</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사. (현행과 같음)</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푸른미래도시국 -----</p> <p style="padding-left: 20px;">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바. 문화환경국 -----</p> <p>③ (현행과 같음)</p>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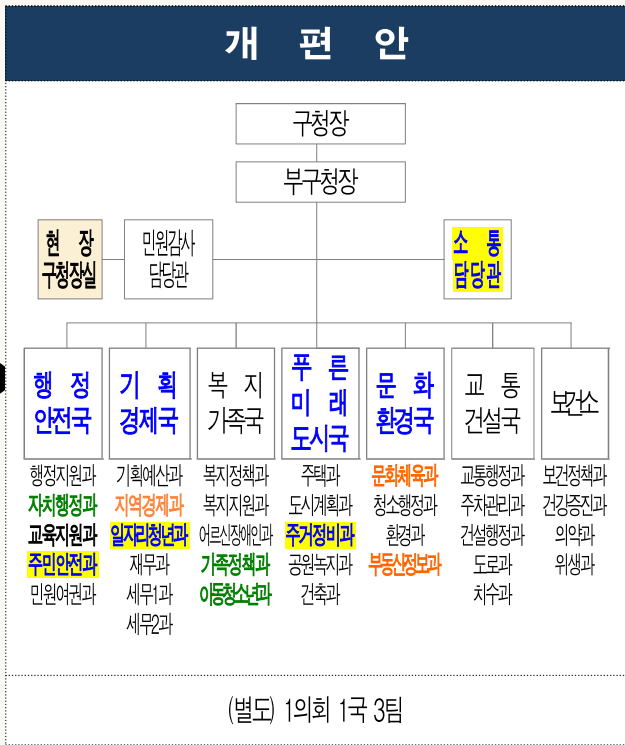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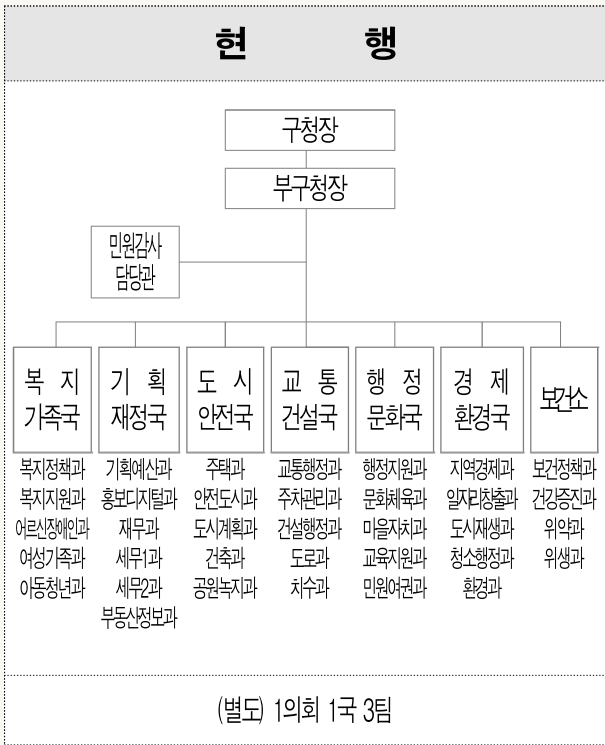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
-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소통담당관” 을 신설
(안 제3조제2항제2호)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기획재정국” 을 “기획경제국” 으로,
“행정문화국” 을 “행정안전국” 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도시안전국” 을 “푸른미래도시국”
으로, “경제환경국” 을 “문화환경국” 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3호)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규정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붙임 1. 행정기구 개편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붙임 1】

행정기구 개편 현황

- (기존) 6국 1담당관 31과, 1소 4과(1분소), 10동(1분소), 182팀
- (개편) 6국 2담당관 30과, 1소 4과(1분소), 10동(1분소), 176팀
- (부서 조정) 국 이동 및 명칭변경 4, 국 이동 3, 명칭변경 3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6., 2014. 12. 30., 2022. 1. 12.>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의회운영위원회 : 6명 이내 <개정 2014. 12. 30.>
2. 행정재경위원회 : 5명 이내 <개정 2008. 3. 6., 2014. 12. 30.>
3. 복지건설위원회 : 5명 이내 <개정 2008. 3. 6., 2012. 7. 17., 2014. 12. 3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

2. 행정재경위원회 <개정 2008. 3. 6.>

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6.>

나. 삭제 <2014. 12. 30.>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0. 11., 2013. 1. 18., 2019. 12. 31.>

라.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 6., 2010. 10. 11., 2013. 1. 18., 2019. 1. 16.>

마.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 18.>

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 18.>

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6.>

3. 복지건설위원회 <개정 2008. 3. 6., 2018. 1. 15.>

가. 복지가족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 6., 2010. 10. 11., 2019. 1. 16., 2019. 12. 31.>

나. 도시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0. 11., 2019. 12. 31.>

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0. 11., 2013. 10. 31., 2019. 12. 31.>

라. 삭제 <2019. 1. 16.>

마. 삭제 <2019. 12. 31.>

바.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17.>

③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상임위원의 선임 후 상임위원의 개선 또는 보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4. 12. 30.>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4. 12. 30.>

②보임되었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7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 12. 30.>

②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 12. 30.>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2.>

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 활동기간,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2. 1. 12.>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2022. 1. 12., 2022. 1. 12.>

④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1. 12.>

⑤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1. 12.>

⑥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 12.>

⑦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22. 1. 12.>

[중전 제4항에서 이동]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 12. 30.>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 12. 30.>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30.>

제1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둔다. <개정 2014. 12. 30.>

②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